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029

발의연월일: 2023. 3. 30.

발 의 자:김영주·양향자·정태호

장철민 · 홍영표 · 강준현

김승남 · 조승래 · 홍정민

최혜영 · 남인순 · 김정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 앙재난방송협의회를, 지역위원회(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)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,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,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.

그러나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,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9개뿐이며,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역재난방송협의 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. 또한, 정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연계

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한바, 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 별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·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둘 수 있다"를 "두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역위원회에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재난방송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재난방송협의회"라 한다)"를 "시·도위원회에 시·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위원회에 시·군·구재난방송협의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지역재난방송협의회"를 "시·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·군·구 재난방송협의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재난방송협의회) ① 재난	제12조(재난방송협의회) ①
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	
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	
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	
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	
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.	<u></u> 두어야 한다.
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	②
예보・경보・통지나 응급조치	
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	
수 있도록 <u>지역위원회에 시·</u>	<u>시</u> ·도위원회에 시·도 재
도 또는 시・군・구 재난방송	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,
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지역	필요한 경우 시・군・구위원회
재난방송협의회"라 한다)를 둘	에 시・군・구 재난방송협의회
수 있다.	
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	③
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	
령령으로 정하고, <u>지역재난방송</u>	<u>시·도 재</u>
<u>협의회</u>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	난방송협의회와 시・군・구 재
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	<u>난방송협의회</u>
의 조례로 정한다.	